

# 포레나 대전학하 1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 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분양일정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hakh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건본주택 관람은 오픈기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관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일정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온도 체크, 손 소독 미실시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및 상담전화(☎1533-383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7.**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하며,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1.10.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불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주택공급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hakha>)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①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②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대출제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등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2.11.07.(월)	2022.11.08.(화)	2022.11.09.(수)	2022.11.17.(목)	2022.11.19.(토) ~ 11.25.(금)	2022.11.28.(월) ~ 11.30.(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내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li>-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973번지</li> </ul>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32496호(2022.10.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76-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1~34층 11개동 총 1,029세대 중 872세대 분양  
[특별공급 460세대(기관추천 87세대, 다자녀가구 87세대, 신혼부부 174세대, 생애최초 87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타입별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2000730	01	084.0000A	84A	84.9577	26.4713	111.4290	56.6404	168.0694	45.6893	521	680	68	68	136	68	20	360	320	23
				84C	84.7955	26.4713	111.2668	56.5323	167.7991	45.6021	80									
				84D	84.6676	26.4713	111.1389	56.4469	167.5858	45.5333	79									
	02	084.9688B	84B	84.9688	26.4193	111.3881	56.6476	168.0357	45.6953	192	192	19	19	38	19	5	100	92	6	
합계											872	87	87	174	87	25	460	412	29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비율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내벽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청약주택형 안내

공고상 주택형(청약시)	084.0000A	084.9688B
약식표기	84A, 84C, 84D	84B

- ※ 대전광역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입면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타입(84C,84D)의 침실2,3은 돌출되거나 안쪽으로 인입되게 계획되어있으며, 해당 타입은 주택형 084.0000A에 포함되어 청약되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타입은 무작위 배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 홈페이지에는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내 타입은 등호수 배정과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동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잔금(30%) 입주 지정기간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23.03.13	2023.09.13	2024.02.13	2024.08.13	2025.02.13	2025.08.13		
84.0000A	84A	103동 1,3호 104동 1,2호 105동 1,2호 106동 1,3,4호 107동 1,3,4호 108동 1,2호 109동 1,3,4호 110동 1,3,4호 111동 1,3,4호	1층	8	145,720,527	346,279,473	492,0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2층	23	145,720,527	356,279,473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3~5층	63	145,720,527	367,279,473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6~9층	68	145,720,527	372,279,473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10층 이상	359	145,720,527	383,279,473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84C	103동 1,3호 105동 1호 111동 1,3,4호	3~5층	3	145,442,319	367,557,681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6~9층	12	145,442,319	372,557,681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10층 이상	65	145,442,319	383,557,681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84D	103동 1,3호 105동 1호 111동 1,3,4호	3~5층	3	145,222,943	367,777,057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6~9층	12	145,222,943	372,777,057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10층 이상	64	145,222,943	383,777,057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84.9688B	84B	103동 2호 106동 2호 107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111동 2호	1층	6	145,739,565	329,260,435	475,0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2층				6	145,739,565	340,260,435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3~5층				18	145,739,565	350,260,435	496,0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6~9층				24	145,739,565	356,260,435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10층 이상				138	145,739,565	366,260,435	512,0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 동라인 세부내역 (참고)

구분	동구분
84C	103동 1호(10~13층, 17~19층, 24~28층) / 103동 3호(5~9층, 14~16층, 20~23층) / 105동 1호(10~13층, 17~19층, 24~28층) / 111동 1호, 3호 (5~10층, 16~19층, 23~27층) / 111동 4호(11~15층, 20~22층, 28~33층)
84D	103동 1호(5~9층, 14~16층, 20~23층) / 103동 3호(10~13층, 17~19층, 24~28층) / 105동 1호(5~9층, 14~16층, 20~23층) / 111동 1호, 3호 (11~15층, 20~22층, 28~33층) / 111동 4호(5~10층, 16~19층, 23~27층)

공통사항

■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 및 피트가 있는 동은 그 해당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0000A	84.9688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대전광역시	14	4	18
		세종특별자치시	2	1	3
		충청남도	4	1	5
	국가유공자		14	4	18
	장기복무 제대군인		7	2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2	9
	중소기업 근로자		14	4	18
	시책추진 해당자		6	1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8	19	87	
신혼부부 특별공급		136	38	174	
생애최초 특별공급		68	19	8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	5	25	
합 계		360	100	46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b>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b>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가능하며</b>,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64 1854 1471 2069">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추천기관

구분	기관
장애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재대군인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시책추진 대상자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
  -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주택공급신청자 연령 ▶ 추첨
  -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74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자
- ③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0.27.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50%)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00% 초과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20%)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초과 ~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20% 초과 ~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추천제(30%)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배우자 소득 없음	14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상위소득 2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천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453,753)\*(N-8), 100% 기준)[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상기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세대원의 실종 또는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축물 +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2">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지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②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거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합니다.**  
**(1인 가구중 단독세대는 본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0.27.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

■ 소득기준(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20%)		130% 초과 ~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453,753)\*(N-8), 100% 기준)[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와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포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상기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 세대원의 실종 또는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5세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자
  -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 ▶ 추첨
  -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또는 청약가점 산정기준 참고)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내 용
<p>특별공급 당첨자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b>가점제(40%) / 추첨제(60%)</b>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li> <li>■ 입주자저축 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기준**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분	내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p>일반공급 당첨자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li> <li>■ 동일순위 주택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주택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li> </ul>

**IV 청약 신청**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b>2022.11.07.(월)</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 건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973번지</li> </ul>
일반 공급	1순위	<b>2022.11.08.(화)</b>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ul>
	2순위	<b>2022.11.09.(수)</b>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일반공급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 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본인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11.17.(목)</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17.(목) ~ 2022.11.26.(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1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또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자격확인 서류 제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11.19.(토) ~ 2022.11.25.(금) (7일간, 10:00 ~ 16:00)</li> <li>■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출 일정 추후 별도 안내)</li> </ul>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973번지)</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li> <li>■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ul>

**당첨자 제출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li> <li>■ 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li> </ul>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li>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li>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li> </ul>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li> <li>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li> <li>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li>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li> </ul>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는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건본주택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자용)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적용례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분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등 특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등 특례 경합시

소형·저가주택등 경합시	주택수	적용기준
①제53조 각호(5호 제외) + ②제53조 제6호	0	①, ② 무주택 인정
①제53조 각호 + ②제53조 제5호	1	① 무주택 인정 / ② 특례 미적용
①제 53조 각호(5호 제외) + ②소형·저가주택등	1	① 무주택 인정 / ② 특례 미적용
①제53조 제2호 + ②제53조 제6호 + ③소형·저가주택등	1	①,② 무주택 인정 / ③ 특례 미적용
①제53조 제5호 + ②소형·저가주택등	2	①,② 특례 미적용
①소형·저가주택등 + ②소형·저가주택등	2	①,② 특례 미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등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사례	적용기준
소형·저가주택등 기 매각 + 소형·저가주택등 기 매각	현재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등 1채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소형·저가주택등 기 매각 + 제53조 각호(5호 제외) 기 매각	현재 무주택자 (보유기간 전부 무주택기간 산정 가능)
소형·저가주택등 기 매각 + 제53조 각호(5호 제외) 보유	현재 무주택자 (보유기간 전부 무주택기간 산정 가능)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 제53조 각호(5호 제외) 기 매각	현재 무주택자 (보유기간 전부 무주택기간 산정 가능)

■ 분양권등 주택소유여부 판단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 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잔여세대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A유형(주택형)	100	200(경쟁)	100	X	X	
B유형(주택형)	100	200(경쟁)	80	X	20	잔여 20세대 주택소유 인정
C유형(주택형)	100	50(미달)	30	50	20	잔여 70세대 모두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D유형(주택형)	100	50(미달)	50	50	X	잔여 50세대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 경쟁발생 여부 판단은 주택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초 정당당첨자는 경쟁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택소유로 봄

Ⅶ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11.28.(월) ~ 2022.11.30.(수) (3일간, 10:00 ~ 17:00)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973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본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공급금액	경남은행	207-0142-4011-0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가전 및 가구,인테리어 등' 납부계좌가 모두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외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①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15만원	35만원

- ②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
  - ※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안내(중도금 무이자)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조건으로 6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약정일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 ■ 공사 진행 안내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통지하고, 설명회 당일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음)
- 최초 개최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설명회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현장 내부는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할 수 없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설명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미납 공급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공동체 커뮤니티, 키즈카페, 스쿨버스 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 기계 및 전기실이 등이 있습니다.

##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하자보수 및 하자판정기준 등

- 하자 등에 따른 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고,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084.0000A	84A	22,300,000	2,230,000	20,070,000
	84C			
	84D			
084.9688B	84B	21,500,000	2,150,000	19,350,000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공간 활용 및 세대 사용에 있어 확장형 대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와 인접한 확장 세대의 경계벽에는 발코니 비확장 세대 벽면 및 천정쪽으로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제 사용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상판, 주방가구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확장형 세대 대비 창호의 위치 및 크기, 종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벽의 개구부 중 콘크리트 난간 없이 오픈된 부위는 세대 타입 및 층수에 관계없이 철재 난간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 CG 및 모형과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경남은행	207-0142-4011-0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가전 및 가구,인테리어 등' 납부계좌가 일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선택안	타입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3.09.13	2024.08.13	입주지정일	
기본형	선택1	전타입	거실+주방+침실1	5,200,000	520,000	1,040,000	1,040,000	2,600,000	LG전자 (IoT 포함)
	선택2	전타입	(선택1)+침실2+침실3	7,800,000	780,000	1,560,000	1,560,000	3,900,000	
	선택3	84A,C,D	(선택2)+알파룸	9,300,000	930,000	1,860,000	1,860,000	4,650,000	
고급형 (공기청정)	선택1	전타입	거실+주방+침실1	6,250,000	625,000	1,250,000	1,250,000	3,125,000	LG전자 (IoT+ 공기청정kit 포함)
	선택2	전타입	(선택1)+침실2+침실3	9,550,000	955,000	1,910,000	1,910,000	4,775,000	
	선택3	84A,C,D	(선택2)+알파룸	11,400,000	1,140,000	2,280,000	2,280,000	5,700,000	
냉매배관	-	전타입	침실2+침실3	1,800,000	180,000	360,000	360,000	900,000	

- ※ 자녀방 냉매배관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또는 '기본형 선택1', '고급형 선택1' 선택시에만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과 별도로(계약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 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만 시공되며 침실2, 침실3의 냉매배관은 추가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 계약과 냉매배관 추가옵션 선택은 시행위탁사가 선정한 별도 업체 계약건으로 시공사인 (주)한화건설과는 무관합니다.

■ 가전 및 가구, 인테리어 등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품 및 설명	설치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	빌트인 3구인덕션 쿡탑	LG BEI3GTBI	주방	전체	1,120,000	112,000	1,008,000
	빌트인 전기오븐	LG MZ385EBT			360,000	36,000	324,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DIB22S			1,350,000	135,000	1,215,000
	전동 빨래건조대	파세코 PCD-100(WHITE)	발코니	200,000	20,000	180,000	
가구	현관 중문(수동)	3연동 AL프레임+유리	현관	전체	1,830,000	183,000	1,647,000
	현관 중문(자동)				3,270,000	327,000	2,943,000
	자녀방 불박이장	슬라이딩장	침실3	84A,84C,84D	1,550,000	155,000	1,395,000
			침실2	84B	1,550,000	155,000	1,395,000
	세탁선반	2단 선반	다용도실	84A,84C,84D	500,000	50,000	450,000
				84B	400,000	40,000	360,000
	드레스룸 선택형	AL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84A,84C,84D	2,400,000	240,000	2,160,000
84B				3,600,000	360,000	3,240,000	
알파룸 선택형	AL슬라이딩 도어	알파룸	84A,84C,84D	1,260,000	126,000	1,134,000	
인테리어	프리미엄 바닥 마감	외산타일	거실/주방/복도	전체	2,000,000	200,000	1,800,000
	프리미엄 주방	플랩상부장+세라믹상판/벽 + 아일랜드형 후드+고급 싱크볼	주방	84A,84C,84D	5,900,000	590,000	5,310,000
				84B	7,290,000	729,000	6,561,000
거실,복도 간접 등	복도판넬, 복도 등박스+간접등, 거실 등박스+간접등	거실/복도	전체	1,400,000	140,000	1,260,000	
설비	비데일체형 양변기	대림 B&co DST-660N	공용욕실	전체	400,000	40,000	36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사업주체인 (주)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시행위탁자 (주)평정과 별도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선택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중도금 대출자서 기간 등)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아파트 공급계약 시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침실1, 2, 3, 알파룸 등)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는 견본주택의 84A타입과 같은 마감재의 사양으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하며,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기본형에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타입, 수량, 위치 등이 기본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옵션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프리미엄 주방 마감 옵션 선택시 확장형 기본주방과 마감 자재 및 형태, 약세사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고, 후드와 싱크볼 사양이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바닥 마감 옵션 선택시, 사용상 주의에 따른 낙상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농협은행	301-0318-0499-91	주식회사 평정
가전 및 가구, 인테리어 등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가전 및 가구,인테리어 등' 납부계좌가 일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IX 기타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은 2022년 05월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li> <li>■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anwha.forena.co.kr/hakh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 본 단지는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속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혼합 단지(1,2단지)로, 금번 1단지(101동, 102동 제외) 일반분양분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셔야 합니다.</li> <li>■ 본 단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 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당 사업외 기반시설(도로, 녹지, 학교, 상하수, 전기, 난방, 가스,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시공범위 이외의 단지 접속도로,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사용승인이 연기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통해 입주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취/등록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 하더라도 미등기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상 및 각종 금융처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및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 사업 외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li> <li>■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당 사업은 '21.3.15.「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학교용지 및 시설 기부채납협약」체결에 따라 학하초를 인근 학교부지(학하동 759)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있으며,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변경에 따라 분양 후 시설 및 규모등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li> <li>■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 등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인접 2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와 별개의 일정으로 분양하며 각각의 개별 사업이므로, 각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및 시설물, 조경, 주차장 등의 규모, 수량 등은 각 해당 단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 비례하여 계획되지 않고 서로 상이하오니 이를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및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 등의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li> <li>■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li> <li>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li> </ol> </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 홈페이지(hanwha.forena.co.kr/hakha)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 탑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정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전기실 및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형태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설계 및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li> <li>■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li> <li>■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방음벽(최고 35m 높이)이 설치될 경우 인접한 주거동(103동,104동,105동)에 속한 세대는 일조 및 조망, 통풍 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li> </ul>

구분	내용
	<p>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은 실제 시공시 그 구간 및 공법, 높이,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를 넘어 그 구조를 구성하는 일부가 단지 외 부지를 점용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이 구간에 따른 점용 등의 사용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내부에는 옹벽 등이 설치되며, 보행로와 인접한 부위일 경우 그 단차가 발생하는 부위에 안전을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되며, 그 외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옹벽 등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자의에 의한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및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는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li> </ul>
<p>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전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 대전 학하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이며,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초등학교는 학하초, 중학교는 덕명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나,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i> <li>■ 당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관내 기존 고등학교에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 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관청의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당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면적 등)의 변경, 교육정책의 변화 등으로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p>주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외 인접한 주변으로 재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될 수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 시점의 주변 여건은 해당 사업 등의 건축물 신축공사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조 및 채광, 조망, 소음, 사생활 등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각 사업주체를 통해 그 계획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등의 설치위치, 높이, 형상,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2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근(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82번지)에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및 휴먼스토리(구 신생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이동통신설비 등 설치 예정 위치(추후 변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102동, 105동, 106동, 107동 / (지상 1층)110동, 111동 인근</li> <li>-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102동, 105동 106동 107동 / (지하 1층)110동 제연헬름 / (지하 2층)111동 PIT / (지하 3층)103동 헬름</li> </ul> </li> <li>■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배치 및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소한 부지 특성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li> <li>■ 진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경사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특성으로 단지 내/외부에 단차가 다소 발생하여, 이를 위해 단지 내 다수의 계단과 공용 승강기가 설치되며, 각 주거동 및 시설물의 접근 및 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 통행에 있어 그 동선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li> <li>■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단지 동측 출입구이며, 이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계획되어있고, 방문자 차량 및 근생 주차장과 출입구를 겸용하기에 주차 차단기는 문주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외부 차량이 단지 내 도로로 일부 접근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별도의 차량 부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li> <li>*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li> <li>*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옹벽,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li> <li>* 단지 내 진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li> </ul> </li> <li>■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옹벽 중 인접대지 구역 외 녹지 등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옹벽은 실제 시공시 옹벽의 구간 및 공법, 높이,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시공사에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옹벽 등을 포함한 각 외곽 경계부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 유지관리 의무는 본 단지에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103동, 107동, 110동, 111동의 경우 주차장 출입구와 세대 및 주동출입구가 인접하여 소음, 매연 등의 의한 환경권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환기구)가 각 주거동 및 조경 시설물(놀이터 등)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주출입구 문주 형태,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의 위치 및 동,층,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레벨차로 인해 주동 전면에서 출입하지 못하고 상부 레벨의 후면에서 진입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주동은 단지 출입구에서 지상을 통한 접근보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하는 동선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주동은 인접한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등) 및 쓰레기보관소 등과 인접하여 채광 및 조망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니 필히 전시모형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타입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술 배분한 값으로, 실제 각 타입별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별 계단실과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량 및 개수, 형상, 재질은 주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호는 채광을 위한 것으로써 개폐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한 세대 후면 창호와 인접하여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일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별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에는 통풍을 위한 개폐창이 설치되나,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5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주동별 세대 현관문과 인접한 승강기홀의 계획이 상이하고, 각 주동에 따라 일부 타입(84A,84B,84C,84D)은 현관문과 승강기문이 직접 마주보게 근접하여 프라이버시에 불리할 수 있고 해당 계획 조정은 불가하오니 위 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지상 레벨차로 인한 데크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각 주동별 근접한 지하주차대수와 그 이용 동선에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103동, 105동의 일부 외벽에는 커튼월록이 시공되며 해당 시공구간에 포함된 세대의 거실창 및 안방 발코니 외창의 난간은 철재난간이 설치됩니다.</li> <li>■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li> <li>■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환기시설(정화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103동, 11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보관소 등이 위치하여 소음, 분진, 악취, 야간 시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107동~110동은 인접한 옹벽으로 인해 채광 및 조망 등에 있어 불리하므로 필히 분양 홍보자료 및 전시모형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위 사항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단 위 세 대</p>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li> <li>■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 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주동별 결함으로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대전광역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입면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타입(84C,84D)의 침실2,3은 돌출되거나 안쪽으로 인입되게 계획되어 해당 실의 실내 깊이가 타 타입 대비 깊거나 짧게 설치되므로 필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실2,3이 돌출되거나 인입되는 일부세대(84C,84D)는 상부 세대의 돌출로 인한 실내 채광 등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 및 옹벽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시설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야외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영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주방, 거실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li> <li>■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②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ul> </li> <li>■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 우물천정 높이는 2.4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li> <li>■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류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li> <li>■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등의 가구류의 경우 경첩, 서랍재,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대 설치시 내부 헤어드라이기 수납 하드웨어는 본납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동빨래 건조대 설치시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빨래봉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석재류 화장대 및 욕실 상판의 경우 자재 생산의 규격으로 인해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와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형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 마감재, 일부 제품품목이 미시공되므로, 분양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와 접한 확장세대의 바닥 및 벽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벽체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사양, 수량,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쿱탑이 기본 시공되며, 가스배관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까지만 시공됨. 가스계량기 이후 주방내부로 인입되는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 시공(줄눈, 탄성코트 등)으로 인한 하자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시 세대 천정 기계 배관 설치공간 확보에 따라 거실 및 일부 침실, 드레스룸의 커튼박스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확장되는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 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의 형상에 따라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견본주택에 지급품목으로 명기되어 전시되거나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을 위</li> </ul>

구분	내용
	<p>한 시스템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쪽으로 인하여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설치 공간의 천정에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세탁 및 발코니 배수를 위한 수평배관들이 노출 시공되므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세탁기 및 건조기의 규격에 따라 병렬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li> <li>■ 우수 선출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바닥배수구, 우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 내 대피공간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니 바랍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실은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으며,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피난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릅니다.(층별교차 시공)</li> <li>■ 하향식 피난구는 하층에 필로티 또는 피트,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시공되지 않으며, 완강기가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 커버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다용도실에 손세탁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수전 중 냉수와 결합된 스프레이건이 설치됩니다.</li> </ul>
<p><b>창호 / 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시 창호 내측 창틀, 창짝 제조사 접합부위(연귀)에 사선으로 백색라인이 노출됩니다</li> <li>■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 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손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소음, 하드웨어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주거동(103동, 105동) 외벽에 커튼월록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105동에 속한 일부 타입(1~4층을 제외한 84A)의 거실창 및 안방발코니 외창은 철재난간이 설치됩니다.</li> <li>■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에만 설치되며 창짝 중 한쪽의 창짝에만 설치됩니다.(거실창은 양쪽 끝단부 창짝)</li> <li>■ 전 타입에 설치되는 주방창은 조망강화형 창호가 설치되어 유리부분은 개폐할 수 없으며, 별도 패널을 통해 개폐하여 통풍하는 구조로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창호 및 문의 경우 발코니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색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
<p><b>전기 / 기계 / 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안방,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팬트리, 드레스룸,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좌우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거실 월패드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li> <li>■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출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는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되고, 설치 공간 천정에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의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기본 시공됩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미시공 됩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 타입 욕실내 일부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li> <li>■ 본공사시 부부욕실의 경우 세면대 하부에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조적 가벽 또는 커버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 할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3구 하이라이트 전기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가스배관이 주방으로 인입되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li> </ul>
<p><b>부대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지하 1~2층 및 지상 1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저층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거동과 함께 결합된 시설이므로 일부 주거동 지상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공간으로 구분되어 함께 이용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명을 위한 내부 집기류(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임대차 관련 비용 일체 포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골프연습장의 타석 개수는 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타석 수 축소 및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어지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임대차비용 포함)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 설비업체 운영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입주자는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세대수 대비 무인택배함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p><b>주차계획</b> (지하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 및 택배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하주차장 주행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외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아파트 1,471대, 근린생활시설 5대 총 1,47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대수는 세대당 약 1.43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입주민 전용으로 계획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출입구 인근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li> <li>■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각 층별로 나누어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계획은 오직 충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계획상 기동간격이 일정하지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p><b>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 및 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옹벽 및 레벨차로 인한 경사지 형성으로 인해 일부 인접 구간은 조경 활동 공간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의 저층부(1~5층)는 식재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 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입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주거동(103, 105동) 외벽에 커튼월록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105동에 속한 일부 타입(1~4층을 제외한 84A)의 외부난간은 철재난간이 설치되며, 해당 계획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 개선이 불가하며 건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li> <li>■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별 외장재는 저층부는 석재가 시공되나 계단실과 승강기 홀로 구성된 코어 부분은 도장이 적용됩니다.</li> <li>■ 각 주동별 외장 석재 적용 층수는 인접한 데크 부분 계획에 의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전기 / 통신 / IoT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홈넷서버 운영을 위한 전용IP 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함. 그 후 발생하는(인터넷 업체 변경 포함) 전용IP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발전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 무료 서비스 내용)될 수 있습니다.(한화건설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사 제공 APP 적용)</li> <li>■ 견본주택 영상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li> <li>※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열재 사양 및 공공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 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와 2단지 사이 통합 연결도로는 1,2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의 유지관리 의무를 갖게 되며,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사고 등 발생 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li> </ul>

■ 견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84A,84B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의 재료는 블록 포장으로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 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방충망은 견본주택용 방충망입니다. 본공사시 방충망의 색상, 재질,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li> </ul>

구분	내용
	<p>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벽판넬, 브라켓 및 펜던트 조명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li> <li>■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선택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홈페이지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분양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b>홍보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및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 홈페이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li> </ul>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16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 조치 준수(가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 층 설치(다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O(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O(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O(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O(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O(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다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O(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O(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월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통신 감리	소방 감리
회사명	(주)유탭엔지니어링	화성감리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206,565,900원	714,095,000원	739,200,000원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평정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산하이앤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149번길 20, 302호(학하동)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 모비딕빌딩8층)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서초동, 세원빌딩)
법인 등록번호	110111-1714818	160111-0505416	110111-2558405	110111-5680502

※ 합병 관련 안내(주식회사 한화건설→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은 2022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로 합병됩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한화건설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한화건설은 해산하게 됩니다.

**건본주택**

구분	약도	안내사항
내용	<p>[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9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건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li> </ul> </li> <li>■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일정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대표번호 : 1533-3838</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s://hanwha.forena.co.kr/hakha/">https://hanwha.forena.co.kr/hakha/</a></li> </ul>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